

:

:

1 .

.

,

가

.

,

.

.

.

2 .

가 .

:

.

:

.

:

.

가

.

:

.

,

3

3

(

)

(

"

"

)

4

"(

)"

"(

)"

,

2

4

1

1.

2.

3.

가

4.

5.

6.

1

가

( " " )

3

8 2

1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북한주민사체의 발견 및 통보 등) ①북한주민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기관(이하 "신고접수기관"이라 한다)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, 현장검증후 그 사체를 인근 국·공립 병원에 인계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신고접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북한주민사체로 판단한 이유</li> <li>2. 북한주민사체의 발견지점 및 시각</li> <li>3. 북한주민사체를 발견한 자의 인적사항</li> <li>4. 북한주민사체가 지닌 유류품</li> <li>5. 북한주민사체를 인계한 병원의 소재지 및 연락처</li> <li>6. 기타 특기할 사항</li> </ol>	<p>제3조(북한주민사체의 발견 및 조치) 북한주민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기관(이하 "신고접수기관"이라 한다)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북한주민사체의 조사)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합동정보신문조(이하 "합신조"라 한다)는 신고접수기관으로부터 북</p>	<p>제4조(북한주민사체의 조사 등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한주민사체의 발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합신조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북한주민사체의 발견일시·장소 및 경위

2. 북한주민사체의 상태

3. 북한주민사체가 지닌 유류품 목록

4. 북한주민사체를 인수한 기관 및 사체를 안치한 병원

5. 합신조의 조사결과

6. 기타 특기할 사항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신조의 조사결과 북한주민사체가 민간인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사체를 인수하여 인근 국·공립병원에 안치하고 사체·사체사진과 사체에서 취득한 유류품을 당해 병원소재지의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비용부담) 제5조 및 제6조의  
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사체의 처  
리 및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 
다. 다만, 남한의 연고자의 의사  
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에  
는 당해 연고자가 부담한다.

<신 설>

④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 
여 사체사진 및 유류품을 인수받  
은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인계하여  
야 하며, 사체는 통일부장관이 정  
하는 기간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인  
계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용부담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
의한 북한주민사체의 처리 및 관  
리비용의 집행업무를 당해 국·  
공립병원 소재지의 시장등으로  
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.

1 ( )

.

2 ( )

.

1. " " ( " " )  
가 . .

2. " " 777

.

3 ( )

( " " )

.

4 ( )

.

1.

2.

( " " )

3. ( )

1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
가

1

가

( " " )

3

5 ( )

( " " )

.

· ,

,

가

.

.

,

가

.

가

,

.

6 ( )

가

가

.

7 ( )

가

,  
.

8 ( ) 5 6

가가

,  
가 .

1

.

.

9 ( )

. .

가

.

.

.